

1. 교육의 회복,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최근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혁신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위해 논쟁하는 정책입안자들…. 혁신이라는 말은 낡은 것을 바꾸고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혁신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 자꾸 떠오른다. 지금의 학교가 혁신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보면, 그건 과거 어느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학교의 모습이다. 어쩌다 우리의 학교가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왜곡되었나하는 씹쓸한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고 보면 혁신학교의 의도는 ‘혁신’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다. 혁신-회복-은 화려한 교육 방법이나 교육 도구들의 변화와 도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과 우정, 신뢰, 협력 등등의 가치들이 진정성있게 다시 학교로 들어 올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와 교육의 모습이 된다. 지금 학교는 교육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다시 본래의 자리인 교육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동 바둥 거리고 있다. 그것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교육 본질로의 회복’이다.

가.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 교육의 왜곡은 드디어 학교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부르는 지경에까지 왔다. 더 이상 교육의 왜곡을 견디기 어려워 아예 죽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현장을 관찰해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지만,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은 없다. 즉, 비난하고 미워하며 배제하는 행위는 많은데, 돌봐주고 협력하며 지지하는 행위는 없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난과 배제를 멈추고 돌보고 협력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돌보고 협력하는 교육적 노력에 앞서 비난과 배제의 폭력적 상황을 되돌아 보자.

학교 안에서 왜 비난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해 학생들은 왜 슬퍼하지 않은가?

첫째, 학교 안에서 비난과 배제는 왜 일어나는가?

-지나친 경쟁적 구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를 지적하고 싶다.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성취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기 위해 힘을 쏟기 어렵다. 타인은 자신의 성취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로 여겨질 뿐이다. 학교구조는 경기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경주마를 키우는 장이 되어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첫바퀴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라고 독려한다. 왜 달리는지 성찰의 시간마저도 아깝게 여기고 무조건 달리라고 한다.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돌아 볼 수 있는가. 개인에게 ‘너’는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반갑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둘째, 비난과 배제의 행위에 대해 왜 슬퍼하지 않는가?

-관계의 단절

타인을 심하게 괴롭히는 놀이가 학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슬프지 않다는 것이다. 타인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즉,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타인의 슬픔이 내게 울려오지 않는다. 타인과 나 사이를 이어주던 끈을 끊어 버리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편안하게 놀리고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나.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향점

1) 관계성 회복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적·상호의존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성 체온은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폭력과 자살 등이 발생하며, 인간의 삶이 피폐해진다. 관계 끊기를 선택한 그들에게 다시 평화로운 관계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평화로운 공동체의 회복

관계성 회복은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관계는 그물망처럼 더 큰 관계성인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즉, 가정, 학급,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공동체가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 주어야 하며,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안전하고 협력적인 공동체에서의 힘의 구조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배적·권위적 구조이기보다는 공동체가 힘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파트너십구조이다.

3) 교육적 관점 회복 (교육적 목표와 교육적 방법의 일치)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은 비난하거나 배제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해결 수단도 ‘평화’이어야 한다. ‘비난하기’나 ‘배제하기’의 수단에서 ‘협력하기’, ‘포용하기’의 교육적 수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경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다. 학교폭력을 교육적 관점으로 전환하기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많은 대안들은 교육적 관점이나 접근이 미흡하다고 여겨

진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관점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의 원인	지나친 경쟁적 구조와 관계성의 훼손	
학교폭력 해결의 교육적 목표	분쟁 종식	⇒ 당사자 간의 화해와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
학교폭력의 정의	형사적 사건	⇒ 갈등의 폭력적 대응 및 형사적 사건
갈등에 대한 이해	안전을 위협하는 것	⇒ 인간 상호작용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
교사의 역할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 권위자	⇒ 갈등을 드러내고 평화적으로 다루는 중재자.

라.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관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의는 비난과 배제를 통한 고통부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와 공동체가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회복함으로써 정의는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 회복적 정의는 수단·방법차원이 아닌 철학이나 삶의 패러다임으로써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가 교육운동 차원으로 발전한 것으로, 교육에 있어 훈육과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 되고 있다.

1)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가) 목표

-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성 향상을 통해, 존중과 배려, 책임과 협력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 나) 교육적 전제
 - (1) 교육관
 - 교육의 목적은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획득할 자신의 모습이 훨씬 사랑스럽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넬 나딩스 Nel Noddings)
 - (2) 인간에 대한 이해
 - 개별 존재의 신성함 (인간은 절대적인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 상호연계성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3) 교사의 역할

- 지배자 모델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모델
-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케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 공동체의 1/N로서의 역할 (학생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생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

(4) 배움의 방식

- 관계적 배움 중심
- 목적과 수단의 일치
- 비폭력적인 Win-Win 방식 (비폭력은 상대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을 끌어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자발적 동기 부여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통제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 힘을 주는 방식 (Empowerment)
-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 참여와 공동체의 협력

(5) 갈등에 대한 이해

- 갈등 자체는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2.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모델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와 방식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천 모델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감적 의사소통, ‘비폭력대화’

공감능력은 내면의 폭력성을 가라앉히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옳은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 비폭력대화는 마셜 B. 로젠포그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절대 감 없이, 서로의 인간성을 보는 차원에서 질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Need와 상대의 Need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비폭력대화는 서로 마음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유의하며 의식하고 대화한다. 비폭력대화는 연민의 언어, 기린의 언어라고도 표현한다. 기린 언어의 상대적 표현은 자칼의 언어다.

관찰(↔평가)	그 때 그 때의 상황을 관찰로 “있는 그대로” 보기
느낌(↔생각)	그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자각하기
욕구(↔수단)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발견하기
부탁(↔강요)	상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부탁하기

비폭력대화의 사례

: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학생에게 노트북을 교무실에 갖다 놓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때 여학생은 “싫어요.”라고 대답했다.

기린의 언어	자칼의 언어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관찰 ↔ 평가	예의가 없구나.
서운했어.	느낌 ↔ 생각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니?
도움이 필요했거든.	욕구 ↔ 수단	노트북을 교무실에 갖다 놓는 것이 필요해.
어떻게 생각하니?	부탁 ↔ 강요	당장 갖다 놔.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칼식 언어로 반응한다. 자칼식 표현은 학생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즉각적으로 교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으나, 학생과의 관계성은 훼손된다. 관계성이 훼손되면, 상대는 피하거나 언젠가는 저항하거나 공격하게 만든다. 기린의 언어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과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하며, 서로의 욕구가 조화로운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한다.

나. 적을 협력자로 부르는 공동체의 자기 돌봄 프로세스, ‘회복적 서클’

교실에서 하루도 갈등이 없는 날이 없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로 달라서 싸운다. 그리고 교사에게 달려온다. “선생님! ○○가 제 물건을 가져갔어요.”, “선생님! △△가 저를 때렸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좀 더 큰 문제까지, 교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마치 판사나 경찰이 된 듯이 판결을 내린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교사 : “싫어요”라는 말을 들으니 서운해.

선생님은 도움이 필요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 : 음... 전 교무실에 가고 싶지 않아요.

교사 : 넌 교무실 가는 게 불편해?

학생 : 네.

교사 : 선생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넌 편안함이 중요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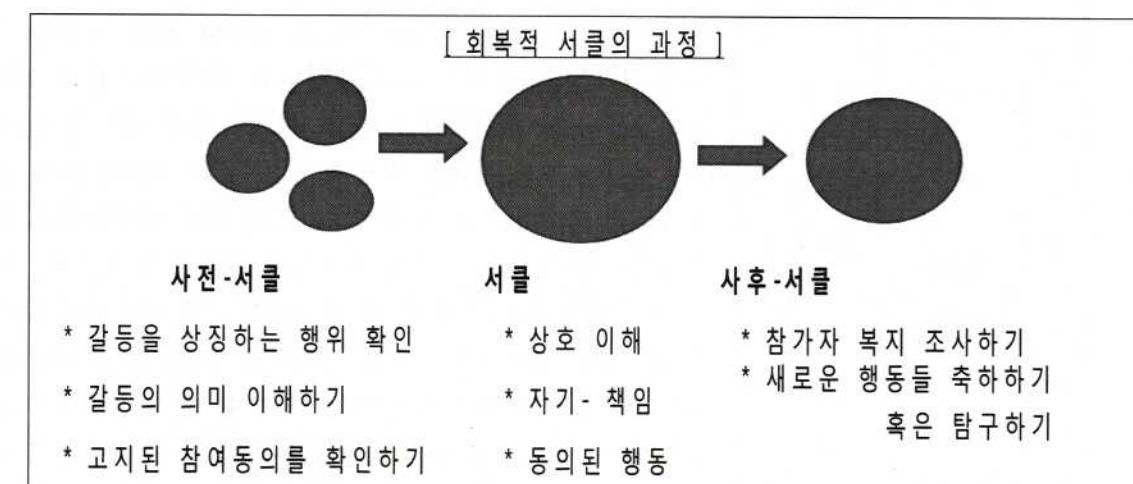
학생 : 샘~ 교무실 앞에까지는 들어다 드릴게요.

교사 : 정말? 고마워^^

지. 그러나 교사는 판결자로서가 아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체내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실천 모델이 바로 도미닉 바터의 ‘회복적 서클’이다.

도미닉 바터는 범죄와 살인률이 높았던 브라질의 슬럼가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범죄율은 떨어졌고, 회복적 서클은 그 지역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

회복적 서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복적 서클은 원수들이 만나는 곳이다. 회복적 서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적이미지를 해소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준다. 지난 2012년 ○○중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복적 서클로 다루었으며, 의미있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번	서클 초대자	갈등의 형태	사례
1	중2 남 학생 2명 학부모 3명 학생부장 보건교사	괴롭힘 싸움	A가 B의 성기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일로 인해 그동안 참아왔던 B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A와 B는 초6때부터 소소한 일로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B는 이번 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비해 A는 장난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화모임을 통해 B는 그 동안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그에 비해 상대는 장난수준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A의 어머니는 B의 고통에 대해 사과 했고, 두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의 일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상대방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참지 말고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2	중2 여학생 4명	소문 교우 관계 오해	A는 ○○을 좋아했던 사실을 B가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 말했는지 불안했고,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던 B에게 화가 나 있었다. A는 B가 늘 변명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다. C는 B가 자신을 볼 때 째려보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B는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의 말을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했다. B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외롭고 불안할 때, 다른 그룹의 친구들이 와서 잘 해주면서 A의 이야기를 물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해 주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 일로 인해 A는 상처를 받고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A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안을 받았고, A에 대해 오해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로 했다.
3	중2 남 학생 2명	심한 욕설 소문 비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몇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꼬는 행동들이 관찰되고, 학급내의 왕따 당하는 학생의 호소가 있어서 담임교사가 서클을 제안했다. 학생들

여학생 2명 담임교사	분위기	간에 점심급식시간에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밥을 먹는다거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욕을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 간에 심한 욕설(창녀, 걸레, 엄창, 네 에미...)로 인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갈등하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한 여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은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여학생 그룹은 왕따 문제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했고, 급식시간에 줄서지 않고 먹게 된 정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심한 욕설로 인해서 불쾌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오갔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에 대해 지나치게 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했고, 이전처럼 사이좋고 평화롭게 지내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욕설하지 않기와 한 학생에 대해 여러 명이 동시에 심하게 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작은 농담이나 장난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같이 웃어주고 맞장구도 쳐주는 긍정적 반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학급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	-----	--

위의 ○○중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회복적 서클을 통해 갈등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 간에 싸움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중재자가 되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대응은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학생들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적 서클 모델을 경험한 학생들은 갈등에 대해 직면을 선택했고, 방관자가 아니라 중재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학생들은 회복적 서클을 인지적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배웠다. 삶을 통한 생생한 배움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책을 통한 배움보다 삶의 모델과 경험을 통한 배움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회복적 서클을 통해 관계 회복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시 학급 공동체로 통

합될 수 있었다.

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전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가해자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폭위(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와 조정을 위해 ‘피해자-가해자 대화 모임’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2010년부터 서울 가정법원에서 학교폭력사안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용되어 온 모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 이럴 경우,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립적인 위치로써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 훈련된 조정 전문가 또는 중재 전문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갈등도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교육과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KOPI와 한국NVC센터, 비폭력평화물결 등 NGO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들이 있다.

라.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평화감수성 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은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Empowerment- 방식이다. 즉,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길러주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폭력을 행하는 많은 학생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처벌과 비난으로 자체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은 더욱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건강한 정서적 회복을 불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에게는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화감수성 교육’이 더욱 적극적인 학교폭력 대책 방안이 된다. 평화감수성 교육으로 ‘또래 조정자 훈련’, ‘비폭력대화 훈련’, ‘HIPP 훈련’, ‘사회적·감정적 학습(SEL)’ 등등의 평화교육 및 다양한 인성교육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책임감, 존중, 신뢰, 우정 나아가 자신과 타인, 환경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핵심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HIPP(자기 긍정과 관계형성을 위한 평화교육)의 교육과정

회차	주 제	과제
1	오리엔테이션	안전/신뢰하며, 긍정적인 활동 분위기 형성
2	경청	성공적인 경청과 경청 기술 익히기
3	의사소통	나 메시지 전달/평화로운 의사소통
4	긍정과 자기 존중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자존감, 자아존중
5	신뢰와 협력	존경, 고려, 협력의 기술
6	사실/판단/느낌	인터뷰와 소개/가정/사실과 감정 분리
7	다양성	사물, 사건, 상황의 이해 다양성
8	차이 이해	차이발견, 존중, 이해
9	갈등해결 1	갈등 관찰하기 / 갈등 전환에 대한 이해
10	갈등해결 2	갈등 전환 상황극 (실제 상황 다루기)
11	공동체 구축 / 공동 협력 1	의사결정과 협력
12	공동체 구축 / 공동 협력 2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

마. 개인의 성장을 통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기, ‘서클 프로세스’

서클 프로세스는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으며, 위협과 수치심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모두의 말을 듣는 가운데 서로의 진실과 지혜를 연결시킨다. 몇몇 용상가나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공동의 지혜가 중심에서 전체를 인도하는 참여형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것은 논쟁에서 대화로, 비난에서 공감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박성용(평화운동가)

서클 프로세스는 북아메리카 토착 원주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토킹 피스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자기 부족을 지탱하는 뿌리의 일부로 받아들였다.⁶⁾ 서클의 전통은 현대 사회에 와서 공동체의 힘이 나누어지고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구조로 재조명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서클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몇 가지의

6) 서클 프로세스, 케이 프라니스 지음, 강영실 옮김, KAP, p.18

프로그램과 훈련에 의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지향한다. 서클 구조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참여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1) 서클의 기본 철학⁷⁾

-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돋는 것과 같다.
- 서클 참여자들은 서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든 공동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 참여자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주는 동시에 받는다.

2) 서클의 핵심 요소⁸⁾

- 가) 의식 : 참여자들이 다른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일상의 가면과 보호막을 벗도록 격려받기 위한 의식이다.
- 나) 기본 규칙 : 참여자들이 서클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기본규칙을 만드는 목적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말하고 다른 이들과 좋은 방식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필요한 과정에 따라 서클이 진행될 것이라는 명확한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 다) 토킹 스틱 : 서클 참여자들이 내면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는 동안 가만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이들이 온전히 존중하며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 라) 서클 진행자 : 서클 진행자는 해법을 찾거나 서클 참여자들을 통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행자의 역할은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공간과 공동의 과제에 대해 책임감을 나눠 갖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다

7) 서클 프로세스, 케이 프라니스 지음, 강영실 옮김, KAP, p.15

8) 서클 프로세스, 케이 프라니스 지음, 강영실 옮김, KAP, p.49~64

다. 효과적인 진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저절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능력과 과정과 결과의 책임을 모든 서클 참여자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 마)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클 프로세스에서 합의는 보통 모든 참여자들이 그 결정에 따르고 이행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뜻한다.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은 모든 참여자들의 욕구와 이해를 깊이 인식하고, 이렇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 바) 이야기하기의 중요성 : 이야기하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야기하기는 서클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아성찰을 촉진하며 북돋운다.
- 사) 관계에 초점 맞추기 : 서로 깊이 알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서클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3) 서클 프로세스의 사례, 학급의 공유된 목적 세우기

학년 초가 되면 1년을 준비하면서 학급의 규칙을 만들게 된다. 이때,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학급의 공유된 목적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에 비해 공동체 간의 책임의식과 유대의식을 증진시킨다.

1 단 계	교사의 학급에 대한 비전과 의도 말하기	담임교사로서 교육과 학급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소망에 대해 모두가 볼 수 있게 칠판 또는 전지에 기록하거나, 개인 복사물로 만들어 나눠준다.
-------------	--------------------------	---

⇓

2 단 계	1년 동안 학급 안에서의 기대와 열망은 무엇입니까?	학급 안에서 1년 동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핵심 내용을 가치나Need로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한다. 표현된 특정 단어들은 칠판이나 전지에 기록한다. ‘비폭력대화의 Needs목록표’ ⁹⁾ 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의 기대와 열망이 모두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천천히 진행한다.
-------------	---------------------------------	---

⇓

3 단계 돌아가며 자기표현을 한 후에, 칠판(또는 전지)에 표현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추가할 마음이 있는 물어본다. 추가되는 내용들은 기록을 한다.



4 단계 기록한 내용을 보며, 각자 자신에게 가장 영감을 준(또는 가슴에 와닿는) 가치나 Need 3개를 선택하도록 한다.
예시) ‘正’로 표시하거나 스티커를 3개씩 나누어 주어 가치나 Need 옆에 붙이도록 한다.



5 단계 많이 선택된 것을 모아서 다시 기록한다.
예시) 친밀한 관계, 협력, 따뜻함, 수용, 존중, 배려….



6 단계 각각 표현된 열망이나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제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모둠 별로 진행하고,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을 권한다. 취합한 내용은 다시 칠판이나 전지에 정리한다.

예시) 친밀한 관계 - 짹을 2주에 한번 씩 바꾸고, 한 번도 같이 앉아보지 못한 사람과 짹을 한다. 생일축하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급에서 회복적 서클을 개최한다….
※주의: ① ‘~하지 않기’의 부정적 표현은 ‘~하기’의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기, ② 실천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정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실천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회복적 서클을 통해 풀 것을 권한다.



7 단계 모두 모아진 실천 방법과 공동체의 제안에 대한 동의과정을 진행한다.
여기에서 동의란 100% 동의라기보다는 ‘참을 만하다’는 의미의 동의이다. 동의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의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만약 누군가가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준다. 그리고 반대하는 항목과 그가 제시한 대안을 중재하여 결정한다. 이때 동의된 실천방법들은 곧 학급의 규칙이 된다.



8 단계 5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체크도 표시되지 않은 표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표시가 된 표현들을 선택하여 공유하는 목적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 작업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다. 문장을 합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지 위에 문장을 적는다. 이때 완성된 문장이 바로 ‘학급의 공유된 목적’이 된다.

예시) 존중, 친밀한 관계, 배려, 재미, 배움…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는 우리”



9 단계 ‘공유된 목적’과 ‘구체적 실천 방법(학급규칙)’을 전지에 기록하고 모두 함께 읽는다.

작성된 내용에 모두 마음이 움직여 “Yes!”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① 나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포함하고 ②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와닿는 내용이며, ③ 내 마음에 확끌리는 것이 아니어도, 그로 인해서 공유하는 목적이나 규칙에 대해 나의 노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유된 목적’과 ‘구체적 실천 방법’은 학급의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고, 가끔 모두의 소중한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과제

지금 학교현장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현장은 지나친 경쟁적 구조와 관계의 단절로 교육적 본질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기존의 훈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교사의 역량 강화와 기존의 권위적인 학교 구조의 변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가. 교사의 역할 변화와 역량 강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일차적이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교사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1) 교사의 역할 변화

- 패러다임의 전환

많은 경우에, 교사는 통제와 훈육에 치중하는 ‘처벌적’ 태도를 취하거나, 지나친 지

9) 마셜B. 로젠크루스 [비폭력대화]

원과 격려로 ‘허용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처벌적’ 태도는 관계의 손상을 가지고 오거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허용적·방관적 태도는 교사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에 아무런 지도력을 갖지 못하고 학생들의 분위기에 휘둘리게 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교사는 학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앞서 말한 것처럼 갈등을 평화롭게 중재하는 자,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촉진하는 자, 공동체의 1/N로써 학생의 영역과 공간을 존중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통 제 와 ↑ 훈 육 ↓	TO 처벌적	WITH 회복적
	NOT 방임적	FOR 허용적
	← 지원과 격려 →	

2) 교사의 역량 강화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위가 아닌, 공감능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공감적 대화 훈련과 회복적 서클 훈련, 서클 진행자로서의 훈련 등 실질적인 기술 숙달이 필요하다.

나. 교육 구조의 변화

지나친 경쟁적 구조와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구조의 변화가 요청된다. 교육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학교는 경쟁적 구조와 효율성의 가치를 중시되고 있고, 그로 인해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혼자 가면 빨리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처럼 경쟁적인 개인 성장 중심에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적 터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어 온 입시중심의 교육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동체적 참여가 가능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교사가 평등하고 평화적인 조직 구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평등하고 평화적인 구조를 조직해내기 어렵다.

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

학생들은 학급과 학교 뿐만 아니라 더 큰 관계 그물망인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학생

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가정과 학교 밖인 지역사회와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이때 지역 사회 인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입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지역의 인적 자원 및 공간과 시설들을 공유하면서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회복적 생활교육은 폭력을 행한 자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문제의 당사자 뿐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포용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는 미워하는 자를 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은 포용을 선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토양이 다른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아서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지만, 교육의 본질적 회복을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육적 사명이다.

〈사례2〉

학생인권존중,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문화 변화로
학교 폭력이 줄어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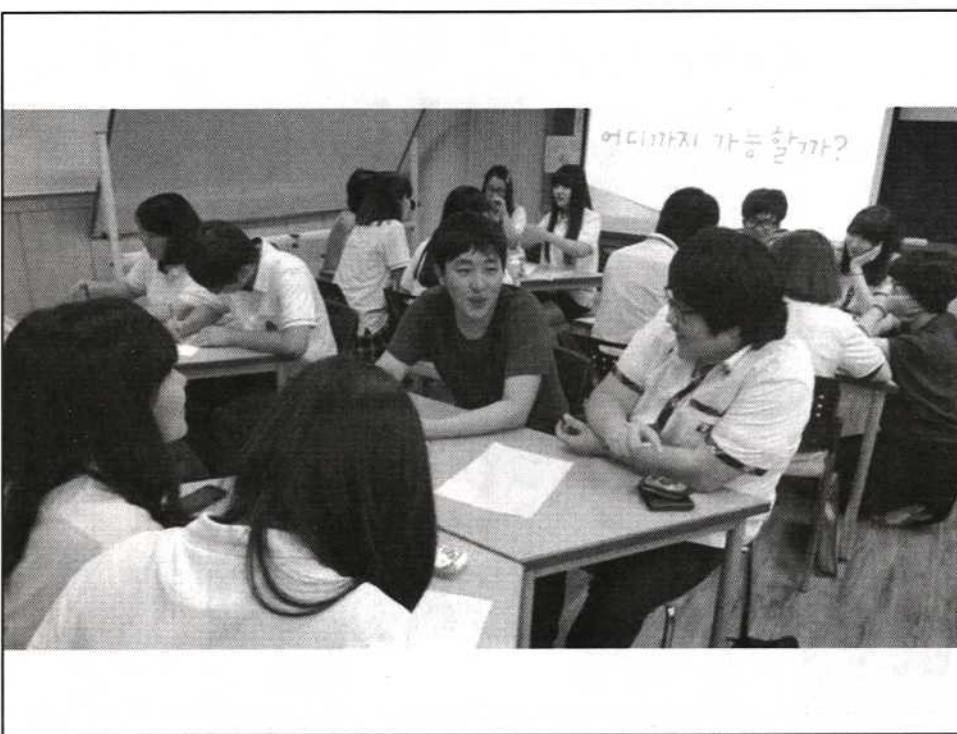
권소정 (홍덕고 학생)

충대고등학교

한국 소통·교양·실천의 배움터

권소정





<수업규칙>

1. 수업시간에 자지 않는다.
2. 숙제 안 해오면 서서 수업 듣는다.
3. 핸드폰 사용 걸리면 3일 뺏긴다.
4. 음식물 섭취하지 않는다.
5. 화장실 가지 않는다.

<평화협정>

-
1. 5분이상 자면 선생님이 깨워주기
 2. 짹꿍이 깨우면 웃으면서 일어나기
 3. 거울은 쉬는시간에 보기
 4. 핸드폰 만지다가 걸리면 교탁 앞에 올려놓기
 5. 마시는 것 외에 깨물어먹는 것 먹지말기
 6. 욕 사용시 대체할 수 있는 말 찾아오기
 7. 경청하기
 8. 지각하면 영어단어 50개 외우기
 9. 모르는데 아는 책 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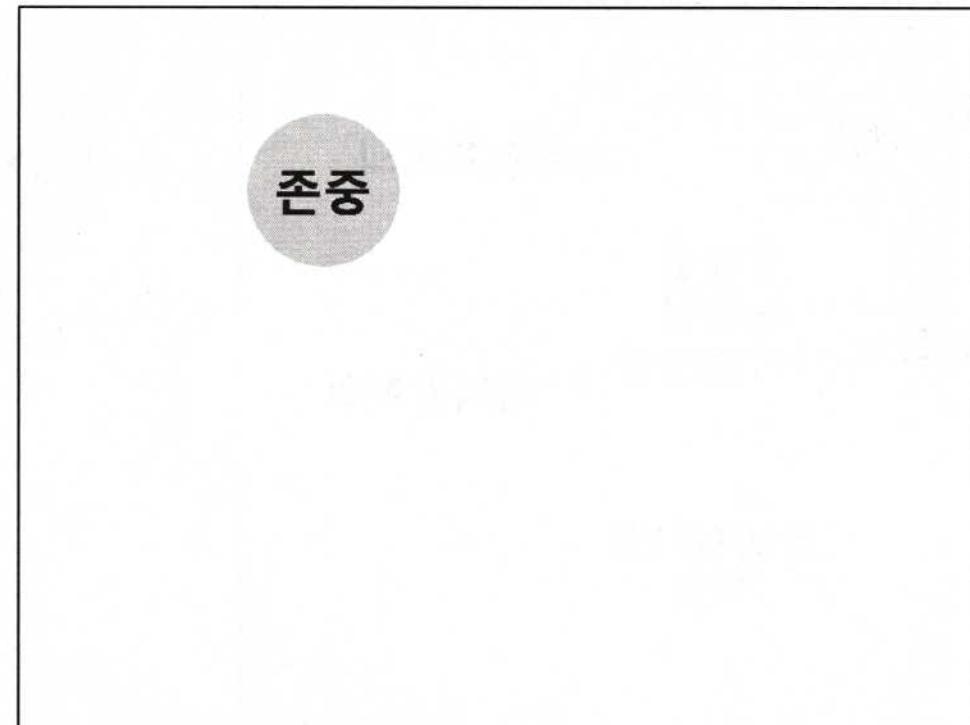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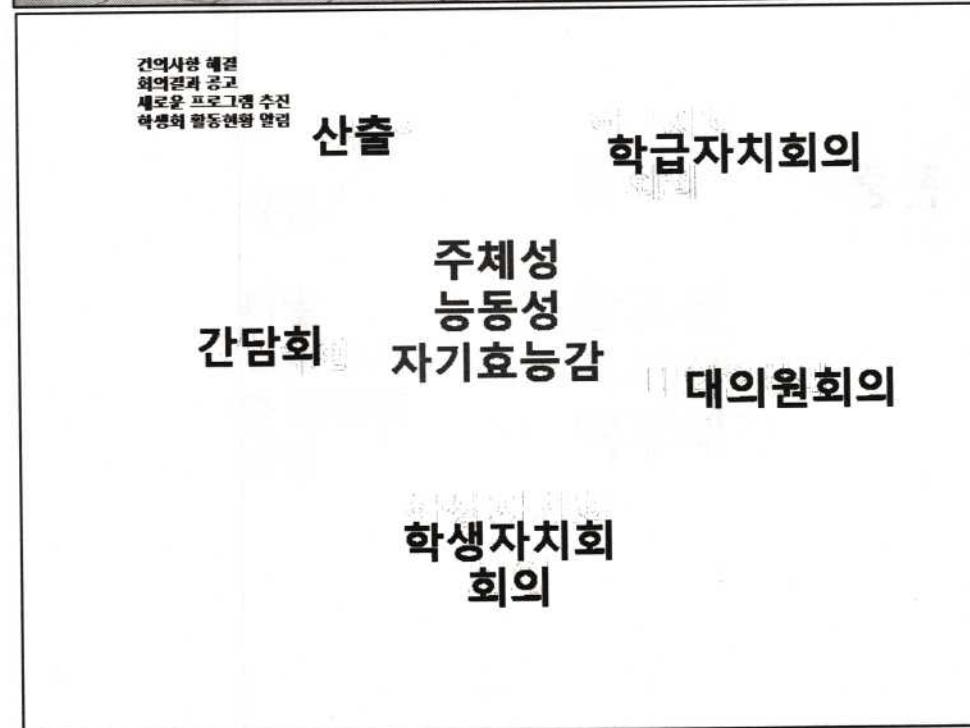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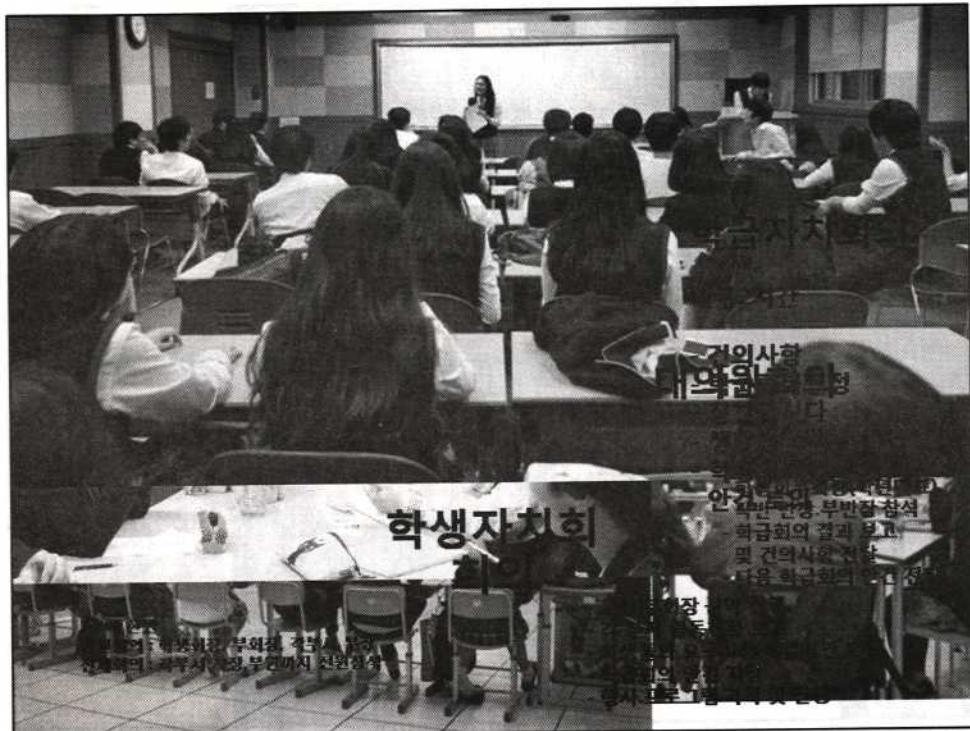
징벌?

체벌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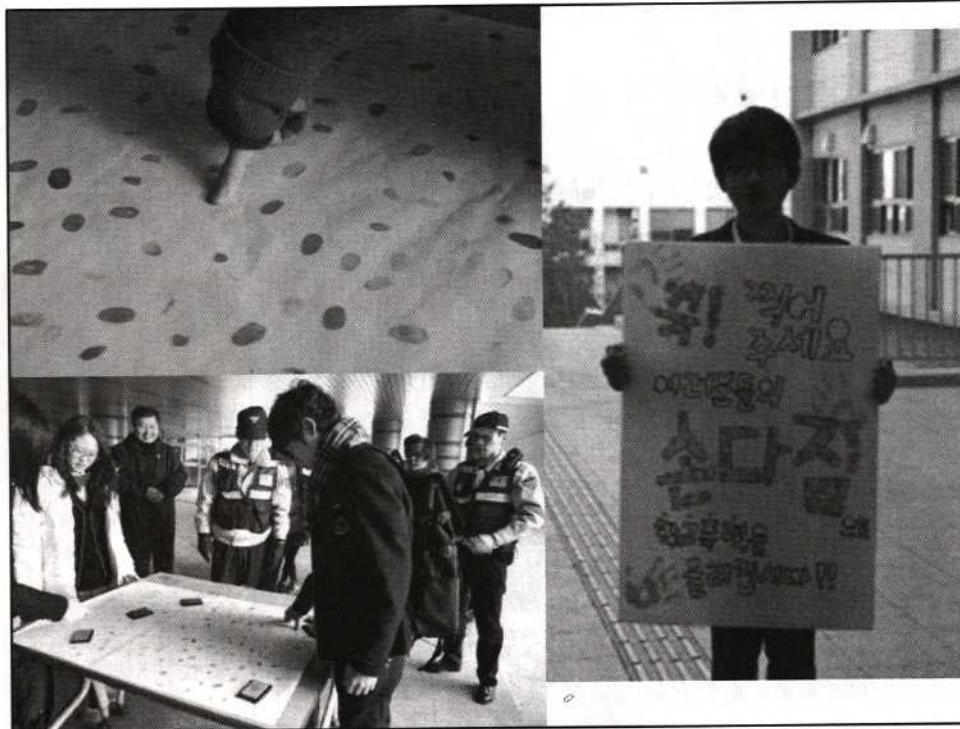
광교산
지리산
백두대간





4.2 친구사랑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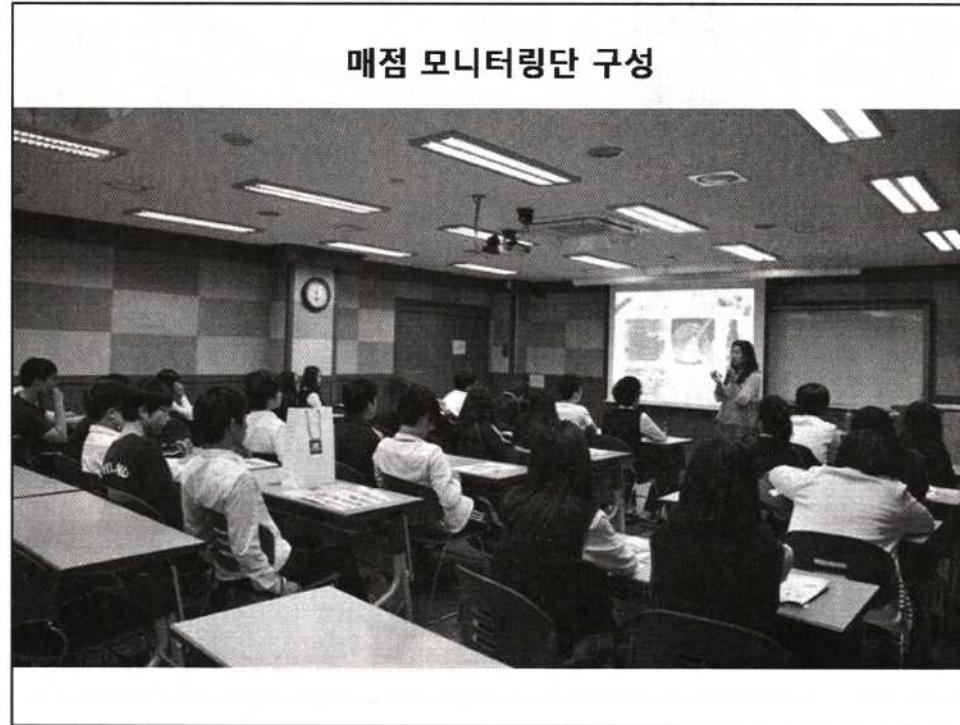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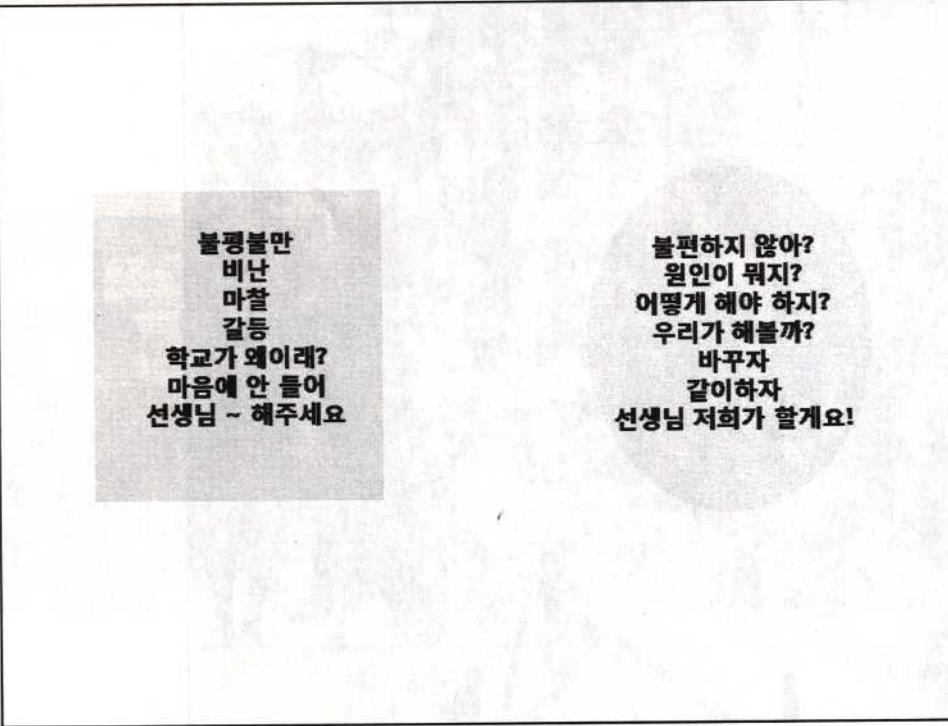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

-> 학생 자체 능력의 향상과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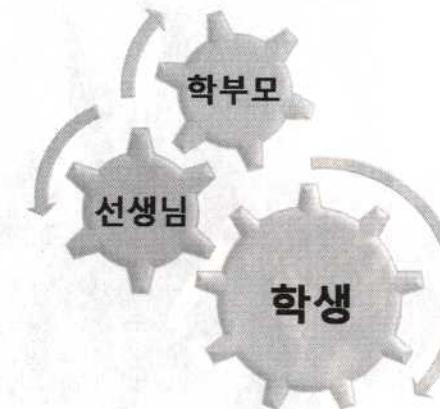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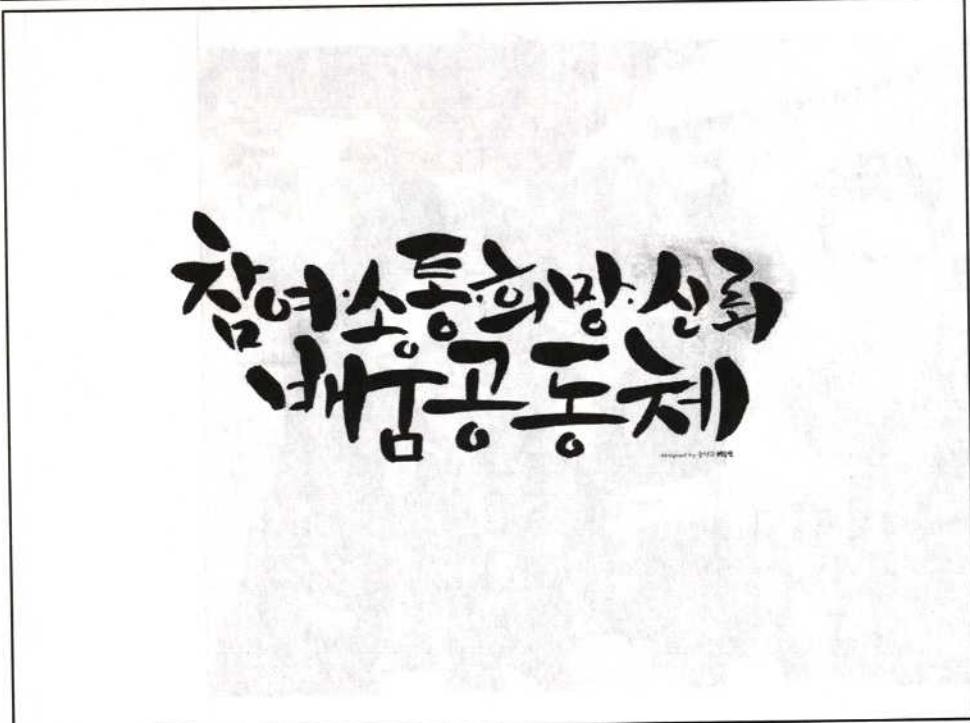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비치



참여
총설
배우
영화
라인
장제
다른
공장
연대





〈사례3〉

아래 토론문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사회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 답을 찾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기사 중 두 번째 기사입니다. [편집자말]

초등학생도 학교이사회의 정식 멤버인 나라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결 ②] 발류 공립초등학교 교장 인터뷰

오연호 대표기자(오마이뉴스)

“공부를 못한 학생도 칭찬을 받습니다. 산만한 학생도 칭찬을 받습니다. 왕따요? 학교폭력이요? 전혀 없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발류 초등학교의 마르그레테(62) 교장 선생님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하고 나서 기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인생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기반이 다져지는구나.

0학년(학습준비학년)부터 9학년(우리의 중학과정 포함)까지 6백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 공립초등학교는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것으로 매우 소박했다. 운동장도 없고 이렇다 할 조경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나 다 볼 수 있는, 큼지막한 교훈도 교문이나 건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경력 16년, 교장경력 18년인 여성교장 마르그레테씨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이 학교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다.

3~9년간 같은 담임, “교사는 부모”

초등학교 6년 내내 같은 반 학생들에 같은 담임선생님이라면? 게다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3년까지도 그것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9년 내내 같은 학생, 같은 담임’이 덴마크에서는 오랜

전통이 되어 왔다. 요즘은 3~6년마다 교체되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 번 만나면 수년간 계속 간다'는 시스템은 그대로이다. 한 번이 23명 정도인 빌류 초등학교는 0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리고 6학년부터 9학년까지 한 번 같은 반이면 계속 같은 반이 된다.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저학년 때는 안정감을 주는 걸 중점으로 하고 고학년 때는 학문적인 도전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눴고 거기에 맞게 담임선생님들도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수년간 같은 담임선생님인데 만약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담임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르그레테 교장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한다.

"글쎄요, 1년에 1명 정도나 될까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부모와 학생이 함께 담임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요. 교장으로서는 담임선생님과 학생 간에 무슨 오해가 있는지 살펴보지요. 대개의 경우 이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는데 정 안되면 다른 반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6백여 명의 학생 중에 1년에 1명 정도만 담임선생님 교체를 원한다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덴마크에서 선생님은 엄마 아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을 해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담임선생님이 학생,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해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특이한 취향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알게 되지요. 그걸 바탕으로 그 아이를 위한 학습방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선생님이 아주 가깝고 친밀감이 있어서 정말 엄마 아빠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부모처럼 된다는 것은 수년간 같은 학생을 한 선생님이 담임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전통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의 특성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사람'으로 그 학생을 대할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하듯이, 이 학교도 1년에 두 차례씩 담임선생님이 학부

모를 심층면담 한다.

"한 번 면담에 약 30분 정도 합니다. 이때 그 학생의 학문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가정환경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원 다 이 미팅에 옵니다."

이 밖에도 부모들은 1년에 3번씩 각 반별로 모여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그 반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등수가 없다, 왕따가 없다

이 학교에서는 7학년까지 시험이 없다. 점수를 매기는 시험은 8학년에 가서야 있는데 그것도 등수는 매기지 않는다. 9학년에 치르는 졸업시험 때도 등수가 없다. 단지 학생들의 진로를 조언하는데 참고만 한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덴마크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은 기본적으로 아이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학년부터 시험을 보지만 점수를 매겨도 등수는 내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상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끼리는 서로 점수를 알 수 있으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워 주거나 특별히 대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쟁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애정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뉜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도록 개별적 칭찬을 해주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칭찬을 해준다"고 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

"물론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잘한다고 거짓말로 칭찬할 수는 없지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작은 목표를 세워줍니다. 만약 20개의 문제를 맞춰야 만점인데 어떤 아이가 절반밖에 못 맞추면, 다음번에는 1개만 더 맞춰도 그걸 아주 크게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갖도록 하지요."

골고루 칭찬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줘서 학교 오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산만한 학생도 칭찬받을 기회 준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도 칭찬받을 기회를 준다"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목표를 정해줘요. 너는 10분만 한 번 조용히 앉아 있어 봐라. 그래서 타이머를 써서 10분 동안 잘 앉아 있으면 아주 많은 칭찬을 해줘요."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참기 힘든, 문제아라고 할만한 아이도 있을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들도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지요. 그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교육은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을 다 포용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장난꾸러기, 문제아들도 용서를 해줍니다. 아이는 용서해주고 대신 부모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한다? 그 탓은 다름 아니라 대화였다.

"그런 경우 부모와 자주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점은 힘을 합쳐서 고쳐보자고. 만약 부모가 협력할 형편이 아니면 학교가 더욱 그 아이를 위해 신경을 써줍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않은 아이를 학교에서도 챙겨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일수록 학교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집에서는 불안했더라도 학교에 오면 마음이 놓이는 곳이 되어야지요."

마르그레테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덴마크의 선생님들은 참 인내심이 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일제히 선생님의 말씀

을 조용히 듣고 있는 풍경은 보기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문란하게 보일 정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데 사실일까?

"그건 아닙니다(웃음). 여기에서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용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게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용히 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자기 권세를 부려서 애들을 처벌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보통 조용히 하라고 하면 다들 말을 듣는데, 소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것까지 포용해야지요."

반장 없이 평등문화 속에서 자란다

덴마크의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도 골고루 사랑을 나눠 받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너와 나는 모두 소중하다는 평등문화 속에서 자란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덴마크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반장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반에서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는 반장이 있나고요? 없습니다. 반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든지 평등하게 하기 때문에 반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반 아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학생회에 파견 나가는 아이는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반을 이끌어간다든지, 내가 대장이라든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 반 아이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른바 왕따 문제도 없는 것일까?

"왕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시키는 게 '어떻게 함께 잘 놀 것인가'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어떻게 같이 놀아야 하는지를 미리 교육합니다. 한두 번 소외당한 것을 가지고 왕따라고 크게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합니다. '놀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을 수 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친구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정도로 다 사랑할 수는 없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그런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왕따 등 학생들 간의 문제로 자살한
다거나 폭력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만이 아니라 덴마크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자살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드물지요. 학교 안에서의 폭력도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위하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지요."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게 도와준다

덴마크의 아이들은 이렇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평등한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간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7학년부터는 진로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진로담당 선생님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학교에 상주해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줍니다. 이때 학생은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점검하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9학년 졸업할 때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것인지를 학생들이 정하는 거지요. 진로결정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나 선생님은 아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는 그 학생의 선택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뿐이죠."

덴마크에는 10학년제라는 독특한 과정이 있다.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학년이라고나 할까?

"상담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학습수준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도 점검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9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가도록 지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1년간 10학년 과정을 거치도록 추천합니다. 10학년의 목표는 학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10학년을 보낼 것인가에도 선택지는 다양하다.

"10학년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다녀도 되고, 별도로 10학년들을 위해 마련한, 1년간의 유료 기숙형 학교인 '에프터스쿨'에서 다녀도 됩니다. 물론 9학년 마치고 바로 고등학교로 직행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학생의 자유인데 덴마크에서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10학년 과정을 거칩니다."

학생도 학교이사회에 정식 멤버로 참여

덴마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적 참여에 대한 훈련을 한다. 마르그레테 교장은 학생회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학생회는 각 반에서 1명씩 파견해서 구성되는데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참여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지요. 최근에는 학생회에서 제안해서 학생들의 의자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했어요. 학생회에서는 학교행정의 최고 결정기관인 학교이사회에 두 명의 학생대표를 파견합니다. 누구를 파견할지는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지요."

학생이 학교이사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 이 공립학교의 이사회는 모두 11명인데 학부모가 7명이고 교직원 2명, 학생 2명이다. 이 이사회를 통해 교장의 교육방안을 승인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가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한 것도 이채롭지만 학생이 이사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르그라테 교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학교를 둘러보았다. 기사에 써먹으려고 특별한 시설이 있나 아무리 다시 살펴보아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학교를 뒤로하고 걸으면서 인터뷰 내용을 곱씹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애정을 골고루 나눠주는 학교,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학교, 학생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도와 하는 학교, 학생이 주인의식과 평등의식을 갖게 하는 학교. 덴마크 곳곳에서 이런 학교들이 행복지수 세계 1위의 나라를 만드는 덴마크 시민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그리고 보니 이 학교의 다른 이름은 행복초등학교였다.

<발제>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강영구 변호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I. 서론

II. 대안적 학교폭력 대응절차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방향

1. 서론
2. 학교폭력 전담기구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화해조정 권한 부여
 -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내실화
3. 자치위원회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가. 자치위원회에 화해조정절차 마련
 - 나. 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솔루션 위원회로서의 역할 부여
 - 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
 - 라. 가·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변론권 보장
4. 학생부 기재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III.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1. 서론
2.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 가.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 명시
 - 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3.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 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여건 개선
 - 나. 교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IV. 결론

I. 서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래 총 1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를 확대하고¹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2011년 말 연이

10) ■ 제정 2004.1.29 법률 제711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6차 전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8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차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10차 일부개정 2012.1.26 법률 제1122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11차 일부개정 2012.3.21 법률 제1138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시행일 2012.4.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 학생의 자살로 다시금 학교폭력이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2년 1월과 3월 국회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을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처분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격리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여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것은 곧 학교폭력에 대한 염벌이 학교폭력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계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전제하지 않은 학생 통제와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은 오히려 학교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관계 회복, 상처의 치유 등 대안적 학교폭력 대응절차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자치역량 강화 등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대안적 학교폭력 대응절차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방향

1. 서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가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사안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벌적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징벌적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는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치 ‘처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빼어 있는 고속도로를 연상케 하며, 이 과정에서 가·피해학생간 관계의 회복, 상처의 치유, 폭력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전담기구·가피해사실 확인

↓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 징벌적 조치 결정
↓
학생부 기재

그러나 학교폭력은 가정과 사회, 학교 공동체 내 여러 가지 위기의 한 양상이며,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정의 불화나 경제적 궁핍,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억압적인 사회가 놓은 또 다른 피해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전통적인 사법제도의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도식에 따른 ‘처벌’이 아닌 ‘공동체의 관계 회복과 상처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적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화해조정 권한 부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가해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안을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사안을 자치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매뉴얼을 통해 일정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사안을 자치위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는 법에 따른 처리가 아니므로 사후에 가·피해학생 중 일방이 자치위원회 회부 여부를 문제 삼을 경우 교사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이 강조되고 있

11)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1.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였을 때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나.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교사는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발생 시 무조건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현행 학교폭력 대책에서 교사는 마치 검사와 같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교육’은 증발하고 ‘처벌’ 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이 더 심각한 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1차적으로 가·피해학생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가·피해학생간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결정으로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그리고 이와 같이 전담기구가 화해조정 역할을 함에 있어 학교의 장은 이를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전담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제6항).

안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② ③ 생략

④ 전담기구는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 및 가해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⑤ 전담기구가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제16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⑧ ⑨ ⑩ ⑪ 생략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내실화

또한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담임교사 또는 학생부장 등 개별 교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전국 초·중·고 배치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책임교사 또는 담임교사 혼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수업 외에 생활교육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시간에 쫓기는 교사들은 실질적인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이는 곧 통제와 처벌이라는 가장 손쉬운 훈육방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대응과 대책에 있어 교사간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와 같은 전담기구가 1차적인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내지 전문상담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문상담인력 양성의무를 부과하고, ‘책임교사’를 2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현재 법상 전담기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임교사’를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내실화하고자 하였다(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교사들이 갈등조정을 위한 연수에 참여하여 대안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제3항).

안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상담교사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2인 및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사안발생시 전담기구에 참여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

성하며, 전담기구의 소속 교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 자치위원회에 화해조정절차 마련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떤 사안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처벌은 가·피해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많은 경우 학교폭력은 공동체 내 관계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회복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처벌은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책임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반발과 보복심을 가지도록 만든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가장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아닌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 역시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려야 한다. 결국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 처벌은 가해학생의 선도에도, 피해학생의 치유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징벌적 조치 전 화해조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가·피해학생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 자치위원회의 화해조정권한을 명시하고(안 제12조), ▲ 가·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치 전 가·피해학생간 화해조정절차가 선행되도록 하였다(안 제15조의 2)¹²⁾

안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12) 이와 유사한 방식이 현재 각 법원의 소년부에서 화해권고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¹⁾. 2010년 처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의 조성·운용 및 사용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권고
5.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6.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지원

7.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8.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상담 및 교육

9. 학급회의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0.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5.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1]]

안 제15조의 2(화해권고) (신설)

① 자치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화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화해권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학생과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솔루션 위원회로서의 역할 전환

또한 현행 자치위원회는 해당초 학교폭력을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로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그 양형을 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 문제의 해결과 이에 대한 치유 없이 학교폭력의 자치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 자치위원회를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지원 중심의 솔루션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가·피해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가·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피해학생이 속한 공동체 전체, 이를 테면 학급 단위 상담과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 가해학생에 대하여도 심리상담,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7조 제1항),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지원 외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명시하였다(안 제17조의 3).

안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

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피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2012.3.21>

2. 삭제<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1.26>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3.21>

안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0. (신설) 심리 상담

11. (신설)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2. (신설) 기타 가해학생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생략

안 제17조의 3(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 (신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자치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어, 위기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학교의 교감, 학생생활지도 교사, 학부모대표, 법조인, 경찰, 의사 중 학교장이 위촉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자치위원회가 교감과 교사,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그 결과 가·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바꿀 필

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 현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전문 상담, 사회복지, 갈등조정 전문가를 상임으로 두고(안 제11조), ▲ 각 전문가들이 관할 구역의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3조). ▲ 또한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3조)

안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담부서에 제1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고, 관할 구역의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안 제1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이외의 학생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교원대표

2. 학부모대표

3. 전문상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

5. 갈등조정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

6.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

- ④ (신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가·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변론권 보장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호자는 생업으로 인하여 자치위원회 참석이 곤란하고, 학생들 역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진술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론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도 보조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도 보조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6조 제2항 및 안 제17조 제5항)

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진술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진술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부 기재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12년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학진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8조¹³⁾). 그러나 학교폭력 징

1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 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차분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그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인하여 가해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의 소지도 크다. 특히 전과기록 말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죄를 범한 경우 형집행 종료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집행 종료 후 2년의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성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로 「소년법」 역시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별은 형별과 비교하여 가벼운 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일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졸업 후 5년이 지나야만 그 징계기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대학입시나 취업, 군지원 등 다양한 생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형사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생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학교 내 문서로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더 나아가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입 및 취업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상급학교 및 대학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안 제21조의 2).

안 제21조의 2(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의 기록 및 활용 금지)

-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급학교 및 대학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1. 서론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구조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해도 좋다는 메시지는 도처에 깔려 있다. 다양성을 인정받고 인격체로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차별과 그 차별에 따른 폭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한다. 결국 학교 안의 폭력적 권리구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아 이들을 처벌, 격리하는 것은 썩은 상자에서 썩은 사과를 탓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 학생자치역량 강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가.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 명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의 4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이어서 실제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다시금 확인하고, 체벌금지, 두발규제금지, 강제학습금지 등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금지되는 인권침해행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학교에 인권부서를 두는 한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안 제17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17조의5(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6.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야간에 학교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보충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안 제17조의6(인권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은 교원 및 학생, 그 보호자에 대하여 매학기 일정 시간 이상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학생인권에 관한 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되, 국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의10(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 된다고 하고 이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별학교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불온시하여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학생자치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학생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안 제1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학교는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결별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안 제17조의2(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입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선출

2.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3.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4.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5.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총학생회는 회의결과와 예·결산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총학생회와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안 제17조의3(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① 학생총회는 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년별, 학급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학생총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⑤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총학생회의 의결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총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탄핵

2.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의 제·개정안

3. 총학생회의 의결로 학생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학생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사항

5. 기타 학칙으로 명시하는 사항

⑦ 학생총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⑧ 그 밖에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생략

2.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방향

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여건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21.6명, 중등의 경우 23.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의 경우 30명, 중등의 경우 35.3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정원이 36명을 넘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 학급 수는 중학교 28,142개, 일반계고등학교 25,493개, 초등학교 3,958개, 전문계고등학교 2,307개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교사무직원(관리직원, 전문직원, 교사보조, 기타)의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사의 직무영역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생활교육 외의 행정업무는 미미한 수준이고, 보조행정인력을 통하여 행정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교사 대비 행정·사무직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 과도한 행정업무 속에서 교사가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행정사무직원을 확충함으로써 교사가 교과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가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생에 맞는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무행정, 일반행정, 전산사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각각의 직원을 둔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시행되는 해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 20명 이하

2. 중고등학교 : 25명 이하

안 제21조의2(교원의 업무)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 수업, 평가 등 교과교육

2. 상담 등 생활교육

3. 교육활동과 관련한 연수 및 연구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따른 행정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소속 상관이 근무시간 외 또는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28조(개별지원교육)

① 교사는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빈곤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개별지원교육"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원의 추가 배치

2. 수업 내 또는 수업과 병행한 개인별 지도

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4.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제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보건 및 정신건강 부문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 학생복지지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별지원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나. 교직사회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보장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은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격 있는 교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선택·결정권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교수방법과 내용의 선택·결정의 자유, 성적평가권, 생활지도권, 정계권 등을 들 수 있다¹⁴⁾. 그러나 현재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교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진도에 맞추어 평가 대비 수업을 하면서 이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권위적인 훈육의 방식으로 통제하려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관료적 교직문화 속에서는 교사 역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교직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으로써 교사 역시 자치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우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을 평가한다.

안 제30조의9(교무회의)

① 학교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운영한다.

②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안

2.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안

3. 평가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인사규정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 교무회의는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④ 교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⑥ 학교에는 학년별, 교과별 교사협의회를 두고, 각 학년과 교과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년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사협의회에서 결정한 후 교무회의에 보고한다.

⑦ 교무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년별, 교과별 교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14) 법제처, 교육기본법 해설서, 2011. 9.

야 한다.

안 제30조의10(교원인사위원회)

① 공정한 교원 인사를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내부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정원감축에 따른 교원전보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③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의 선출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인사의 원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은 학내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IV. 결론

2012년 대구 중학생의 자살 이후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감시 강화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사실상 학생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무시해 온 폭력의 학교를 그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의 폭력적 권력구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아 이들을 처벌, 격리하는 것은 썩은 상자에서 썩은 사과를 탓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무엇보다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회복적 교육 절차로 전환하고, 학생인권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이 필요한 때이다.